|  |  |  |
| --- | --- | --- |
| **1.4.7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실시세칙**  1988년 11월 3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호로 공표, 1996년 12월 25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6호에 따라 개정, 2000년 12월 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96호에 따라 제2차 개정, 2011년 12월 12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58호로 공표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에 따라 관련 규장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14년 2월 2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3호로 공표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 등기관리방법>,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규정> 등 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이하《조례》라 약칭함)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1장 등기 범위**  **제2조** 기업법인 조건을 구비한 전인민소유제기업, 집단소유제기업, 연합경영기업, 중국 경내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을 포함) 및 그밖의 기업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기업법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조** 기업화 경영을 실시하고, 국가가 더는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하는 사업단위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성격의 사회단체로서 기업법인 조건을 구비한 경우 기업법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 기업법인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하기 기업 및 경영단위는 영업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합경영기업  2. 기업법인에 속하는 자회사  3.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한 자회사  4. 그밖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제5조**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사업기구에 대하여는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등기하도록 정한 기업 및 경영단위는 《조례》 및 이 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  **제2장 등기 주관기관**  **제7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법인등기 및 영업등기의 주관기관이다. 등기의 주관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급별 등기관리의 원칙을 실행한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기관리를 하며 아울러 등기관리를 수권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상급의 등기주관기관은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하급 등기주관기관의 결정을 수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8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 각호의 기업등기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국무원이 설립을 인가하거나, 또는 업종관리부서가 심사 동의하며, 국무원의 각 부서 및 과학기술적 성격의 사회단체가 설립하는 전국규모의 회사 및 대형기업  2. 국무원이 설립을 인가한 것이거나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서의 심사 동의를 얻어 설립하는 대기업그룹  3. 국무원이 수권하는 부서가 심사 동의하며, 국무원의 각 부서가 설립하는 수출입업무․노무수출업무 또는 해외공사의 도급을 경영하는 회사  **제9조**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 각호의 기업의 등기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설립을 인가하고 또한 업종관리부서가 심사 동의하는 정부 각 부서와 과학기술적 성격의 사회단체가 설립하는 회사 및 기업  2.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설립을 인가하고 또한 정부가 수권하는 부서가 심사하여 설립에 동의한 기업집단  3.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수권하는 부서가 심사 동의하고 정부의 각 부서가 설립하는 노무수출업무 또는 해외공업부, 노동수출업무 또는 해외공사를 도급경영하는 회사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시달하는 기업 또는 자회사  **제10조** 시․현 및 구(현급 이상의 관할구를 말함. 이하 동)의 공상행정관리국은 제8조 및 제9조가 말하는 기업 이외의 그밖의 기업의 등기관리를 책임진다.  **제11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수권한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 각호의 외국투자기업의 등기관리를 책임진다.  1.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또는 정부가 수권한 기관이 인가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수권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기 관리한다.  2. 시 인민정부 또는 정부가 수권한 기관이 인가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수권한 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기 관리한다.  **제12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및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은 등기를 심사하고, 허가된 기업의 관련자료의 사본을 기업이 소재하는 시․현 및 구의 공상행정광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각급 등기주관기관은 등기등록 기록, 등기통계자료 및 관계 기초자료를 관리하고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의 단위 및 개인에 대하여 각종 형태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등기조건**  **제14조**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함).  1. 규정에 적합한 명칭과 정관을 가질 것  2. 국가가 수여하고 기업이 경영관리하는 재산 또는 기업이 소유하는 재산을 가지며 아울러 그 재산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을 것  3. 생산경영규모에 알맞는 경영관리기구, 재무회계기구, 노동조직 및 법률 또는 정관에 설립하도록 정하여진 그밖의 기구를 가질 것  4. 경영범위에 적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과 시설을 가질 것  5. 생산경영규모 및 업무에 맞는 종업원을 가지며 그 중 전문직 종업원이 8명 이상 있을 것  6. 건전한 재무회계제도를 가지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며 또한 자금수지표 또는 대차대조표를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7. 규정에 부합되는 액수와 경영범위에 어울리는 등록자금이 있을 것. 국가가 기업 등록자본 액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집행  8.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알맞는 경영범위를 가질 것  9. 법률 및 법규가 정하는 그밖의 조건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규정에 적합한 명칭을 가질 것  2. 심사 인가기관이 인가한 계약서와 정관을 가질 것  3. 고정된 사업장, 필요한 시설 및 종업원을 가질 것  4. 국가 규정에 적합한 등록자본을 가질 것  5.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적합한 경영범위를 가질 것  6. 건전한 재무회계제도를 가지며 독립채산을 실행할 수 있고 손익을 자기부담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자금수지표 또는 대차대조표를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제16조** 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에 적합한 명칭을 가질 것  2. 고정된 사업장이나 시설을 가질 것  3. 상응한 관리기구와 책임자를 가질 것  4.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종업원을 가질 것  5. 규정에 적합한 경영범위를 가질 것  6. 상응한 재무회계제도를 가질 것  기업법인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연합경영기업은 공동으로 서명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지사는 비독립채산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사무기구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규정에 적합한 명칭을 가질 것  2. 고정된 사업장과 책임자를 가질 것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업무기구는 직접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8조** 기업법인의 정관내용은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하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취지  2. 명칭과 주소  3. 경제성격  4. 등록자금액 및 그 원천  5. 경영범위 및 경영방식  6. 조직기구 및 권한  7. 법정대표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의 범위  8. 재무관리제도와 이윤분배방식  9. 근로자고용제도  10. 정관 변경 절차  11. 종료 절차  12. 그밖의 사항.  연합경영기업의 정관에는 하기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1. 연합 각측의 출자방식․금액 및 투자기간  2. 연합 각측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3. 참가 및 탈퇴의 조건과 절차  4. 조직관리기구의 산생, 형식, 직권 및 결정 절차  5. 주요책임자의 임기.  외국투자기업의 합자경영계약 및 정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및《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4장 등기등록사항**  **제19조** 기업법인 등기등록의 주요 사항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영업등기의 주요사항은 명칭, 주소, 책임자, 경영범위, 경영방식, 경영형태, 소속관계 및 자금액으로 한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의 등기등록의 주요사항에는 명칭, 주소, 경영범위, 투자총액, 등록자본, 기업유형, 법정대표자, 영업기간, 지사, 유한책임회사 투자자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 성명 또는 명칭을 포함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지사의 등기등록 주요사항에는 명칭, 영업장소, 책임자, 경영범위, 소속기업을 포함한다.  **제22조**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업무기구의 등기등록 주요 사항은 명칭, 주소, 책임자, 업무범위, 기간 및 소속기업으로 한다.  **제23조** 기업의 명칭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등기주관부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소, 연락처 및 사업장은 소재하는 시․현․향(진) 및 街道, 번지 및 번호에 따라 상세하게 주소등록을 한다.  **제25조** 등기주관기관이 등기등록을 심사 허가한 경우, 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주관책임자는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자이다. 법정대표자는 기업법인을 대표해서 정관에 근거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서명자이다.  기업의 법정대표자는 반드시 완전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6조** 등기주관기관은 신청단위가 제출하는 문서 및 정관에 명기되어 있는 재산소유권, 자금의 출처 및 분배형식에 근거하여 기업 및 경영단위의 경제형태를 심사 허가한다.  경영형태는 전인민소유제, 집단소유제로 나누어 심사 허가한다. 연합경영기업은 연합 각측의 경영형태를 명기하고 또한 “聯營”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유형에 대하여는 각각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및 외국독자경영으로 나누어 심사 비준한다.  **제28조** 등기주관기관은 신청단위의 신청 및 그것이 갖추고 있는 조건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 그리고 규범화의 요구에 따라 경영범위와 경영방식을 심사 허가한다. 기업은 등기주관기관이 심사 허가한 등기등록의 경영범위와 경영방식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9조** 등록자금액은 기업법인이 경영 관리하는 재산 또는 기업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통화로의 표기이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등록자금은 실제 소유하는 자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업법인의 등록자금의 원천은 재정부서 또는 기업을 설립하는 단위의 조달, 투자를 포함한다.  **제30조**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자금이라 함은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등기주관기관에 등기등록한 자본총액을 말하며 투자자의 불입인수액이다.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 경영기간은 연합경영기업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정관, 합의서 또는 계약서로 확정하는 경영기간이다. 경영기간은 등기주관기관이 등기를 심사 허가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5장 개업등기**  **제32조**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조례》제15조 제1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서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정관은 주관부서의 심사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금신용증명은 재정부서가 전인민소유제기업의 자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자금사정증명은 회계사사무소 또는 회계감사사무소 및 그밖에 자금사정 검사자격을 갖는 기구가 발행하는 자금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기업의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에는 임명서와 사진을 첨부한 개인 이력서를 포함한다. 개인 이력서는 당해 책임자의 인사관계가 소재하는 단위 또는 향진, 가두에서 발행한다.  **제33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서명한 외국투자기업 등기신청서  2. 계약, 정관 및 심사 인가기관의 비준서류와 비준증서  3. 항목제안서 또는 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한 비준서류  4. 투자자의 적법 개업증명  5.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  6. 이사회 명부 및 이사회구성원 성명, 주소 관련 서류, 임명서와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  7. 그밖의 관련서류와 증명서.  **제34조** 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신청서  2. 경영자금액의 증명  3. 책임자의 임명서  4. 사업장의 사용증명  5. 그밖의 관련서류와 증명서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이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기업의 이사장이 서명한 등기신청서  2. 원 등기주관기관의 통지서  3. 소속기업의 이사회 결의  4. 소속기업의 영업허가증 부본  5. 책임자의 임명서  6. 그밖의 관련서류와 증명서.  법률, 법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지사 또는 사무소 설립시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 심사비준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등기주관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문서, 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등록서 및 그밖의 관련서류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 비준 후 각각 다음 각호의 허가증을 발급한다.  1. 기업법인의 조건을 갖춘 기업에《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2. 기업법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나 경영조건을 갖춘 기업과 경영단위에《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3.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한 사무소에《외국투자기업 사무소 등기증》을 발급한다.  등기주관기관은 각각의 등록번호를 정하여 발급하는 허가증에 명기하고 등기당안에 기입한다.  **제37조** 등기주관기관이 발행한《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은 기업이 법인자격과 합법적 경영권을 취득했다는 증빙이다. 등기주관기관이 발행한《영업허가증》은 경영단위가 합법적 경영권을 취득했다는 증빙이다. 경영단위는《영업허가증》을 의거로 인감을 제작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심사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등기주관기관이 발급한《외국투자기업 사무소 등기증》은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한 사무소가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합법적 증빙이다. 사무소는《외국투자기업 사무소 등기증》에 의하여 인감을 제작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장 변경 등기**  **제38조** 기업법인이《조례》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변경등기신청서  2. 원 주관부서의 심사동의서  3. 그밖의 관련서류와 증명서  **제39조** 기업법인의 실제 소유자금이 원 등록자금에 비하여 20%를 상회하는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신용증명 또는 출자검사증명을 지참해서 원 등기주관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주관기관이 기업법인의 등록자본 감자신청을 심사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영범위와 경영방식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40조** 기업법인이 他處(원 등기주관기관의 관할지 내)에 자회사를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원 등기주관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 허가를 받은 후에는 자회사 소재지의 등기주관기관에 개업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기업법인이 국외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또는 자회사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원 등기주관기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 분립 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는 기업은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분립 또는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기업은 개업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에 의하여 종료하는 기업은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 기업법인이 이전(원 등기주관기관의 관할지 내)하는 경우 원 등기주관기관에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 등기주관기관은 새 소재지의 등기주관기관의 전입동의의견에 근거하여《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반환받고 등록번호를 취소하며 이전증명을 발행하고 기업의 당안기록을 새 소재지의 등기주관기관에 인도한다. 기업은 이전증명과 관련부서의 비준문서를 의거로 새 소재지 등기주관기관에 등기변경을 신청하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43조** 기업법인은 주관부서의 변경이 원 주요등기사항에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변경등기, 개업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원 주요등기사항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법인은 주관부서 변경의 관련서류를 가지고 지체없이 원 등기주관기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은 등기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서명한 변경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 결의  3. 투자자, 등록자본, 경영범위, 영업기간 변경시 원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비준문서.  법률, 법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지사 또는 사무소 설립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주소 변경시 장소사용증명을 추가 제출, 등록자본의 증가가 원 계약서의 변경에 미치는 경우 보충협의서를 추가 제출, 기업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와 정관 수정에 대한 보충합의서를 추가 제출, 법정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위촉즉의 위촉증명과 파견되는 자의 신분증명을 추가 제출, 지분 양도시에는 양도계약서와 원 계약서, 정관 수정에 대한 보충합의서, 그리고 양수측의 합법 개업증명과 자금신용증명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이사회성원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원 등록주관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제45조** 경영단위가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기의 절차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증명서는 기업법인의 등기변경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6조**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자회사와 지사가 주요등기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기의 절차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국투자기업의 변경등기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47조** 등기주관기관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단위가 제출하는 관련서류 및 증명서가 구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말소 등기**  **제48조** 기업법인이《조례》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말소등기신청서  2. 원 주관부서의 심사동의서  3. 주관부서 또는 청산조직이 발급하는 채권채무의 청산책임을 지는데 대한 문서 또는 채무청산완료증명  **제49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 만료 또는 영업종료일, 비준증서의 자동실효일, 원 심사 인가기관이 계약종료를 인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 등기주관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며 다음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한다.  1. 이사장이 서명한 말소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 결의  3. 채권채무의 청산완료보고 또는 청산조직이 채권채무의 청산책임 부담 관련 문서  4. 세무기관과 세관이 발급한 완세증명서.  법률, 법규에 원 심사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는 원 심사 인가기관의 인가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를 제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의 말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0조** 경영단위가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말소등기절차와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 및 증명서는 기업법인의 말소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51조** 외국투자기업이 그 자회사와 지사를 철수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기업의 이사장이 서명한 말소등기 신청서  2. 소속기업의 이사회결의  **제52조** 등기주관기관은 말소등기를 심사 허가하며, 또는 영업허가증을 몰수하는 때에는 동시에 등록번호를 취소하고 영업허가증의 정본과 부본 및 인감을 몰수하고 아울러 계좌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등기 심사허가 절차**  **제53조** 등기주관기관이 등기등록을 심사 허가하는 절차는 수리, 심사, 허가, 허가증 발급 및 공고이다.  1. 수리. 등기신청단위가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 증명서 및 작성한 등기등록서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수리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심사. 제출된 문서, 증명서 및 작성한 등기등록서가 관련 등기관리규정에 부합한가를 심사한다.  3. 허가. 심사 및 확인을 거친 후 등기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아울러 지체없이 등기신청단위에 통지한다.  4. 허가증발급. 등기를 심사 허가한 신청단위에 대하여 각각 관련 허가증을 발급하며, 법정대표자(책임자)에게 허가증 수령을 통지하고 법정대표자의 서명 비치수속을 한다.  **제9장 공고 및 허가증 관리**  **제54조** 등기주관기관은 기업법인등기, 등록정보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55조** 기업법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등기주관기관에 직전연도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연도보고의 공시 내용 및 감독검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6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영업허가증》은 각각 정본과 부본으로 나누어지며 같은 법률효과를 갖는다. 정본은 주 사무소 또는 주 사업장에 걸어놓아야 한다. 등기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 및 경영활동 수행의 필요에 따라 영업허가증 부본을 약간부 발급할 수 있다.  국가는 전자 영업허가증 사용을 추진한다. 전자 영업허가증과 페이퍼 영업허가증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57조** 등기주관기관은 설립준비등기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등기를 심사 허가한 후 《설립준비허가증》을 발급한다.  **제58조** 영업허가증의 정본과부본, 《설립준비허가증》,《외국투자기업 지사등록증》, 기업법인 개업등기등록신청서, 기업 영업등기신청서, 기업변경등기신청서, 기업말소등기등록신청서, 기업설립준비 등기등록신청서, 연간검사보고서의 서식 및 그밖의 등기관리에 관한 주요 문서의 서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10장 감독관리와 벌칙**  **제59조** 등기주관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감독관리의 주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이《조례》및 이 세칙에 따라 개업등기,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를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독한다.  2. 기업이 심사 허가된 등기사항과 정관, 계약 또는 협의서에 따라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가의 여부  3. 기업이 규정에 따라 연도보고서를 제출, 공시했는 가를 감독한다.  4. 기업 및 법정대표자가 국가의 관련법률․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독한다.  **제60조** 각급 등기주관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기업에 대하여 감독, 검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기업은 검사를 접수하고 검사에 필요한 문서, 장부, 보고서 및 그밖의 관련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1조** 등기주관기관이 관할구 내의 기업에 대하여 감독,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영업정지 및 정리와 허가증의 압류 또는 몰수에 대하여는 원 발급기관에 한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62조** 상급 주관기관은 하급 등기주관기관이 행한 부당 처벌에 대하여 시정할 권한을 갖는다.  위법기업에 대한 처벌권한 및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국이 각각 정한다.  **제63조** 등기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기업 및 경영단위에 대하여 각호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목을 적용, 처벌한다.  1. 등기 심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업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 경영활동의 종료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등기 신청 시에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를 날조한 것에 대하여는 그 사실의 제공을 명하는 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고, 불법소득 몰수 및 불법소득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사결과 기업법인 조건 또는 경영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증명서를 위조하여 영업허가증을 사취한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3. 임의로 주요 등기사항을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한부로 변경등기를 하게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수속하지 않는 경우 경영중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철수한다. 경영기간을 넘어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무허가경영으로 간주하고 이 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4. 심사 허가된 등기의 경영범위와 경영방식을 초과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를 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국가의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경영에 종사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정리를 명하고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5. 기업법인의 명칭전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기업명칭 등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영업허가증을 위조, 개찬, 임대, 대차, 양도 또는 매각하는 자에 대하여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철수한다.  7.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걸지 않은 경우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 자금을 철수․이전하고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 철수․이전한 자금의 보완과 은닉한 재산의 반환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9.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말소등기를 하도록 명한다.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3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며 아울러 기업 주관부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0. 감독, 검사를 거절하거나 감독,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날조하는 경우에는 감독, 검사를 받게 하고 사실을 밝히도록 명하는 외에 경고를 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기주관기관이 위의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처벌결정을 한 후, 기업이 기한이 지나도록 제소하지 않고 또한 벌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 허위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하여는 허위문서와 증명문서를 발행함으로써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외에,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등기주관기관이 기업의 적법활동을 조사 처분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 등기주관기관은 소정절차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감독, 관리를 하지 아니하며 직무위반이 엄중한 담당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에 연루된 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 기업이《조례》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차상급 등기주관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차상급 등기주관기관은 소정기간 내에 유지, 철회 또는 수정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하며 재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장 부 칙**  **제68조** 《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준비등기를 신청하는 기업은 국무원의 관련부서 또는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전문규정에 따라 설립준비등기를 한다.  **제69조** 홍콩․마카오 및 대만의 기업과 화교, 홍콩․마카오 및 대만의 동포가 투자, 설립한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이 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0조** 중국 국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역)기업의 등기관리에 대하여는 전문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1조** 이 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  **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  　　（1988年11月３日国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１号公布。根据1996年12月25日国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66号修订。根据2000年12月1日国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96号进行第二次修订。根据2011年12月12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58号公布的《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关于按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修改有关规章的决定》修订。根据2014年2月20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63号公布的《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外商投资合伙企业登记管理规定〉、〈个人独资企业登记管理办法〉、〈个体工商户登记管理办法〉等规章的决定》修订）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以下简称《条例》），制定本施行细则。  **第一章 登记范围**  **第二条**　具备企业法人条件的全民所有制企业、集体所有制企业、联营企业、在中国境内设立的外商投资企业（包括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外资企业）和其他企业，应当根据国家法律、法规及本细则有关规定，申请企业法人登记。  **第三条**　实行企业化经营、国家不再核拨经费的事业单位和从事经营活动的科技性社会团体，具备企业法人条件的，应当申请企业法人登记。  **第四条**　不具备企业法人条件的下列企业和经营单位，应当申请营业登记：  　　（一）联营企业；  　　（二）企业法人所属的分支机构；  　　（三）外商投资企业设立的分支机构；  　　（四）其他从事经营活动的单位。  **第五条**　外商投资企业设立的办事机构应当申请登记。  **第六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应当办理登记的企业和经营单位，按照《条例》和本细则的有关规定申请登记。  **第二章 登记主管机关**  **第七条**　工商行政管理机关是企业法人登记和营业登记的主管机关。登记主管机关依法独立行使职权，实行分级登记管理的原则。  　　对外商投资企业实行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登记管理和授权登记管理的原则。  　　上级登记主管机关有权纠正下级登记主管机关不符合国家法律、法规和政策的决定。  **第八条**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以下企业的登记管理：  　　（一）国务院批准设立的或者行业归口管理部门审查同意由国务院各部门以及科技性社会团体设立的全国性公司和大型企业；  　　（二）国务院批准设立的或者国务院授权部门审查同意设立的大型企业集团；  　　（三）国务院授权部门审查同意由国务院各部门设立的经营进出口业务、劳务输出业务或者对外承包工程的公司。  **第九条**　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负责以下企业的登记管理：  　　（一）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设立的或者行业归口管理部门审查同意由政府各部门以及科技性社会团体设立的公司和企业；  　　（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设立的或者政府授权部门审查同意设立的企业集团；  　　（三）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授权部门审查同意由政府各部门设立的经营进出口业务、劳务输出业务或者对外承包工程的公司；  　　（四）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根据有关规定核转的企业或分支机构。  **第十条**　市、县、区（指县级以上的市辖区，下同）工商行政管理局负责第八条、第九条所列企业外的其他企业的登记管理。  **第十一条**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授权的地方工商行政管理局负责以下外商投资企业的登记管理：  　　（一）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政府授权机关批准的外商投资企业，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授权的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登记管理；  　　（二）市人民政府或政府授权机关批准的外商投资企业，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授权的市工商行政管理局登记管理。  **第十二条**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和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应将核准登记的企业的有关资料，抄送企业所在市、县、区工商行政管理局。  **第十三条**　各级登记主管机关可以运用登记注册档案、登记统计资料以及有关的基础信息资料，向机关、企事业单位、社会团体等单位和个人提供各种形式的咨询服务。  **第三章 登记条件**  **第十四条**　申请企业法人登记，应当具备下列条件（外商投资企业另列）：  　　（一）有符合规定的名称和章程；  　　（二）有国家授予的企业经营管理的财产或者企业所有的财产，并能够以其财产独立承担民事责任；  　　（三）有与生产经营规模相适应的经营管理机构、财务机构、劳动组织以及法律或者章程规定必须建立的其他机构；  　　（四）有必要的并与经营范围相适应的经营场所和设施；  　　（五）有与生产经营规模和业务相适应的从业人员，其中专职人员不得少于8人；  　　（六）有健全的财会制度，能够实行独立核算，自负盈亏，独立编制资金平衡表或者资产负债表；  　　（七）有符合规定数额并与经营范围相适应的注册资金，国家对企业注册资金数额有专项规定的按规定执行；  　　（八）有符合国家法律、法规和政策规定的经营范围；  　　（九）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十五条**　外商投资企业申请企业法人登记，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符合规定的名称；  　　（二）有审批机关批准的合同、章程；  　　（三）有固定经营场所、必要的设施和从业人员；  　　（四）有符合国家规定的注册资本；  　　（五）有符合国家法律、法规和政策规定的经营范围；  　　（六）有健全的财会制度，能够实行独立核算，自负盈亏，独立编制资金平衡表或者资产负债表。  **第十六条**　申请营业登记，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符合规定的名称；  　　（二）有固定的经营场所和设施；  　　（三）有相应的管理机构和负责人；  　　（四）有经营活动所需要的资金和从业人员；  　　（五）有符合规定的经营范围；  　　（六）有相应的财务核算制度。  　　不具备企业法人条件的联营企业，还应有联合签署的协议。  　　外商投资企业设立的从事经营活动的分支机构应当实行非独立核算。  **第十七条**　外商投资企业设立的办事机构申请登记，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符合规定的名称；  　　（二）有固定的办事场所和负责人。  　　外商投资企业设立的办事机构不得直接从事经营活动。  **第十八条**　企业法人章程的内容应当符合国家法律、法规和政策的规定，并载明下列事项：  　　（一）宗旨；  　　（二）名称和住所；  　　（三）经济性质；  　　（四）注册资金数额及其来源；  　　（五）经营范围和经营方式；  　　（六）组织机构及其职权；  　　（七）法定代表人产生的程序和职权范围；  　　（八）财务管理制度和利润分配形式；  　　（九）劳动用工制度；  　　（十）章程修改程序；  　　（十一）终止程序；  　　（十二）其他事项。  　　联营企业法人的章程还应载明：  　　（一）联合各方出资方式、数额和投资期限；  　　（二）联合各方成员的权利和义务；  　　（三）参加和退出的条件、程序；  　　（四）组织管理机构的产生、形式、职权及其决策程序；  　　（五）主要负责人任期。  　　外商投资企业的合营合同和章程按《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和《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的有关规定制定。  **第四章 登记注册事项**  **第十九条**　企业法人登记注册的主要事项按照《条例》第九条规定办理。  　　营业登记的主要事项有：名称、地址、负责人、经营范围、经营方式、经济性质、隶属关系、资金数额。  **第二十条**　外商投资企业登记注册的主要事项有：名称、住所、经营范围、投资总额、注册资本、企业类型、法定代表人、营业期限、分支机构、有限责任公司股东或者股份有限公司发起人的姓名或者名称。  **第二十一条**　外商投资企业设立的分支机构登记注册的主要事项有：名称、营业场所、负责人、经营范围、隶属企业。  **第二十二条**　外商投资企业设立的办事机构登记注册的主要事项有：名称、地址、负责人、业务范围、期限、隶属企业。  **第二十三条**　企业名称应当符合国家有关法律法规及登记主管机关的规定。  **第二十四条**　住所、地址、经营场所按所在市、县、（镇）及街道门牌号码的详细地址注册。  **第二十五条**　经登记主管机关核准登记注册的代表企业行使职权的主要负责人，是企业法人的法定代表人。法定代表人是代表企业法人根据章程行使职权的签字人。  　　企业的法定代表人必须是完全民事行为能力人，并且应当符合国家法律、法规和政策的规定。  **第二十六条**登记主管机关根据申请单位提交的文件和章程所反映的财产所有权、资金来源、分配形式，核准企业和经营单位的经济性质。  　　经济性质可分别核准为全民所有制、集体所有制。联营企业应注明联合各方的经济性质，并标明“联营”字样。  **第二十七条**　外商投资企业的企业类型分别核准为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外商独资经营。  **第二十八条**　登记主管机关根据申请单位的申请和所具备的条件，按照国家法律、法规和政策以及规范化要求，核准经营范围和经营方式。企业必须按照登记主管机关核准登记注册的经营范围和经营方式从事经营活动。  **第二十九条**　注册资金数额是企业法人经营管理的财产或者企业法人所有的财产的货币表现。除国家另有规定外，企业的注册资金应当与实有资金相一致。  　　企业法人的注册资金的来源包括财政部门或者设立企业的单位的拨款、投资。  **第三十条**外商投资企业的注册资本是指设立外商投资企业在登记主管机关登记注册的资本总额，是投资者认缴的出资额。  　　注册资本与投资总额的比例，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第三十一条**　营业期限是联营企业、外商投资企业的章程、协议或者合同所确定的经营时限。营业期限自登记主管机关核准登记之日起计算。  **第五章 开业登记**  **第三十二条**　申请企业法人登记，应按《条例》第十五条（一）至（七）项规定提交文件、证件。  　　企业章程应经主管部门审查同意。  　　资金信用证明是财政部门证明全民所有制企业资金数额的文件。  　　验资证明是会计师事务所或者审计事务所及其他具有验资资格的机构出具的证明资金真实性的文件。  　　企业主要负责人的身份证明包括任职文件和附照片的个人简历。个人简历由该负责人的人事关系所在单位或者乡镇、街道出具。  **第三十三条**　外商投资企业申请企业法人登记，应提交下列文件、证件：  　　（一）董事长签署的外商投资企业登记申请书；  　　（二）合同、章程以及审批机关的批准文件和批准证书；  　　（三）有关项目建议书或可行性研究报告的批准文件；  　　（四）投资者合法开业证明；  　　（五）投资者的资信证明；  　　（六）董事会名单以及董事会成员的姓名、住址的文件以及任职文件和法定代表人的身份证明；  　　（七）其他有关文件、证件。  **第三十四条**　申请营业登记，应根据不同情况，提交下列文件、证件：  　　（一）登记申请书；  　　（二）经营资金数额的证明；  　　（三）负责人的任职文件；  　　（四）经营场所使用证明；  　　（五）其他有关文件、证件。  **第三十五条**　外商投资企业申请设立分支机构或者办事机构，应当提交下列文件、证件：  　　（一）隶属企业董事长签署的登记申请书；  　　（二）原登记主管机关的通知函；  　　（三）隶属企业董事会的决议；  　　（四）隶属企业的执照副本；  　　（五）负责人的任职文件；  　　（六）其他有关文件、证件。  　　法律、法规及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规章规定设立分支机构或者办事机构需经审批的，应提交审批文件。  **第三十六条**　登记主管机关应当对申请单位提交的文件、证件、登记申请书、登记注册书以及其他有关文件进行审查，经核准后分别核发下列证照：  　　（一）对具备企业法人条件的企业，核发《企业法人营业执照》；  　　（二）对不具备企业法人条件，但具备经营条件的企业和经营单位，核发《营业执照》；  　　（三）对外商投资企业设立的办事机构，核发《外商投资企业办事机构注册证》。  　　登记主管机关应当分别编定注册号，在颁发的证照上加以注明，并记入登记档案。  **第三十七条**　登记主管机关核发的《企业法人营业执照》是企业取得法人资格和合法经营权的凭证。登记主管机关核发的《营业执照》是经营单位取得合法经营权的凭证。经营单位凭据《营业执照》可以刻制公章，开立银行账户，开展核准的经营范围以内的生产经营活动。  　　登记主管机关核发的《外商投资企业办事机构注册证》是外商投资企业设立的办事机构从事业务活动的合法凭证。办事机构凭据《外商投资企业办事机构注册证》，可以刻制公章，开立银行账户，从事业务活动。  **第六章 变更登记**  **第三十八条**　企业法人根据《条例》第十七条规定，申请变更登记时，应提交下列文件、证件：  　　（一）法定代表人签署的变更登记申请书；  　　（二）原主管部门审查同意的文件；  　　（三）其他有关文件、证件。  **第三十九条**　企业法人实有资金比原注册资金数额增加或者减少超过20％时，应持资金信用证明或者验资证明，向原登记主管机关申请变更登记。  　　登记主管机关在核准企业法人减少注册资金的申请时，应重新审核经营范围和经营方式。  **第四十条**　企业法人在异地（跨原登记主管机关管辖地）增设或者撤销分支机构，应向原登记主管机关申请变更登记。经核准后，向分支机构所在地的登记主管机关申请开业登记或者注销登记。  　　企业法人在国外开办企业或增设分支机构，应向原登记主管机关备案。  **第四十一条**　因分立或者合并而保留的企业应当申请变更登记；因分立或者合并而新办的企业应当申请开业登记；因合并而终止的企业应当申请注销登记。  **第四十二条**　企业法人迁移（跨原登记主管机关管辖地），应向原登记主管机关申请办理迁移手续；原登记主管机关根据新址所在地登记主管机关同意迁入的意见，收缴《企业法人营业执照》，撤销注册号，开出迁移证明，并将企业档案移交企业新址所在地登记主管机关。企业凭迁移证明和有关部门的批准文件，向新址所在地登记主管机关申请变更登记，领取《企业法人营业执照》。  **第四十三条**　企业法人因主管部门改变，涉及原主要登记事项的，应当分别情况，持有关文件申请变更、开业、注销登记。不涉及原主要登记事项变更的，企业法人应当持主管部门改变的有关文件，及时向原登记主管机关备案。  **第四十四条**　外商投资企业改变登记注册事项，应当申请变更登记。申请变更登记时，应提交下列文件、证件：  　　（一）董事长签署的变更登记申请书；  　　（二）董事会的决议；  　　（三）变更股东、注册资本、经营范围、营业期限时应提交原审批机关的批准文件。  　　法律、法规及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规章规定设立分支机构或者办事机构需经审批的，应提交原审批机关的批准文件。  　　外商投资企业变更住所，还应提交住所使用证明；增加注册资本涉及改变原合同的，还应提交补充协议；变更企业类型，还应提交修改合同、章程的补充协议；变更法定代表人，还应提交委派方的委派证明和被委派人员的身份证明；转让股权，还应提交转让合同和修改原合同、章程的补充协议，以及受让方的合法开业证明和资信证明。  　　外商投资企业董事会成员发生变化的，应向原登记主管机关备案。  **第四十五条**　经营单位改变营业登记的主要事项，应当申请变更登记。变更登记的程序和应当提交的文件、证件，参照企业法人变更登记的有关规定执行。  **第四十六条**　外商投资企业设立的分支机构和办事机构改变主要登记事项，应当申请变更登记。变更登记的程序和应当提交的文件、证件，参照外商投资企业变更登记的有关规定执行。  **第四十七条**　登记主管机关应当在申请变更登记的单位提交的有关文件、证件齐备后30日内，作出核准变更登记或者不予核准变更登记的决定。  **第七章 注销登记**  **第四十八条**　企业法人根据《条例》第二十条规定，申请注销登记，应提交下列文件、证件：  　　（一）法定代表人签署的注销登记申请书；  　　（二）原主管部门审查同意的文件；  　　（三）主管部门或者清算组织出具的负责清理债权债务的文件或者清理债务完结的证明。  **第四十九条**　外商投资企业应当自经营期满之日或者终止营业之日、批准证书自动失效之日、原审批机关批准终止合同之日起三个月内，向原登记主管机关申请注销登记，并提交下列文件、证件：  　　（一）董事长签署的注销登记申请书；  　　（二）董事会的决议；  　　（三）清理债权债务完结的报告或者清算组织负责清理债权债务的文件；  　　（四）税务机关、海关出具的完税证明。  　　法律、法规规定必须经原审批机关批准的，还应提交原审批机关的批准文件。  　　不能提交董事会决议的以及国家对外商投资企业的注销另有规定的，按国家有关规定执行。  **第五十条**　经营单位终止经营活动，应当申请注销登记。注销登记程序和应当提交的文件、证件，参照企业法人注销登记的有关规定执行。  **第五十一条**　外商投资企业撤销其分支机构和办事机构，应当申请注销登记，并提交下列文件、证件：  　　（一）隶属企业董事长签署的注销登记申请书；  　　（二）隶属企业董事会的决议。  **第五十二条**　登记主管机关核准注销登记或者吊销执照，应当同时撤销注册号，收缴执照正、副本和公章，并通知开户银行。  **第八章 登记审批程序**  **第五十三条**　登记主管机关审核登记注册的程序是受理、审查、核准、发照、公告。  　　（一）受理：申请登记的单位应提交的文件、证件和填报的登记注册书齐备后，方可受理，否则不予受理。  　　（二）审查：审查提交的文件、证件和填报的登记注册书是否符合有关登记管理规定。  　　（三）核准：经过审查和核实后，做出核准登记或者不予核准登记的决定，并及时通知申请登记的单位。  　　（四）发照：对核准登记的申请单位，应当分别颁发有关证照，及时通知法定代表人（负责人）领取证照，并办理法定代表人签字备案手续。  **第九章 公示和证照管理**  **第五十四条** 登记主管机关应当将企业法人登记、备案信息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第五十五条**　企业法人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登记主管机关报送上一年度年度报告，并向社会公示。  　　年度报告公示的内容及监督检查按照国务院的规定执行。  **第五十六条**　《企业法人营业执照》、《营业执照》分为正本和副本，同样具有法律效力。正本应悬挂在主要办事场所或者主要经营场所。登记主管机关根据企业申请和开展经营活动的需要，可以核发执照副本若干份。  　　国家推行电子营业执照。电子营业执照与纸质营业执照具有同等法律效力。  **第五十七条**　登记主管机关对申请筹建登记的企业，在核准登记后核发《筹建许可证》。  **第五十八条**　执照正本和副本、《筹建许可证》、《外商投资企业办事机构注册证》、企业法人申请开业登记注册书、企业申请营业登记注册书、企业申请变更登记注册书、企业申请注销登记注册书、企业申请筹建登记注册书以及其他有关登记管理的重要文书表式，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统一制定。  **第十章 监督管理与罚则**  **第五十九条**　登记主管机关对企业进行监督管理的主要内容是：  　　（一）监督企业是否按照《条例》和本细则规定办理开业登记变更登记和注销登记；  　　（二）监督企业是否按照核准登记的事项以及章程、合同或协议开展经营活动；  　　（三）监督企业是否按照规定报送、公示年度报告；  　　（四）监督企业和法定代表人是否遵守国家有关法律、法规和政策。  **第六十条**　各级登记主管机关，均有权对管辖区域内的企业进行监督检查。企业应当接受检查，提供检查所需要的文件、账册、报表及其他有关资料。  **第六十一条**　登记主管机关对辖区内的企业进行监督检查时，有权依照有关规定予以处罚。但责令停业整顿、扣缴或者吊销证照，只能由原发照机关作出决定。  **第六十二条**　上级登记主管机关对下级登记主管机关作出的不适当的处罚有权予以纠正。  　　对违法企业的处罚权限和程序，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和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分别作出规定。  **第六十三条**　对有下列行为的企业和经营单位，登记主管机关作出如下处罚，可以单处，也可以并处：  　　（一）未经核准登记擅自开业从事经营活动的，责令终止经营活动，没收非法所得，处以非法所得额3倍以下的罚款，但最高不超过3万元，没有非法所得的，处以1万元以下的罚款。  　　（二）申请登记时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除责令提供真实情况外，视其具体情节，予以警告，没收非法所得，处以非法所得额3倍以下的罚款，但最高不超过3万元，没有非法所得的，处以1万元以下的罚款。经审查不具备企业法人条件或者经营条件的，吊销营业执照。伪造证件骗取营业执照的，没收非法所得，处以非法所得额3倍以下的罚款，但最高不超过3万元，没有非法所得的，处以1万元以下的罚款，并吊销营业执照。  　　（三）擅自改变主要登记事项，不按规定办理变更登记的，予以警告，没收非法所得，处以非法所得额3倍以下的罚款，但最高不超过3万元，没有非法所得的，处以1万元以下的罚款，并限期办理变更登记；逾期不办理的，责令停业整顿或者扣缴营业执照；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超出经营期限从事经营活动的，视为无照经营，按照本条第一项规定处理。  　　（四）超出核准登记的经营范围或者经营方式从事经营活动的，视其情节轻重，予以警告，没收非法所得，处以非法所得额3倍以下的罚款，但最高不超过3万元，没有非法所得的，处以1万元以下的罚款。同时违反国家其他有关规定，从事非法经营的，责令停业整顿，没收非法所得，处以非法所得额3倍以下的罚款，但最高不超过3万元，没有非法所得的，处以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五）侵犯企业名称专用权的，依照企业名称登记管理的有关规定处理。  　　（六）伪造、涂改、出租、出借、转让、出卖营业执照的，没收非法所得，处以非法所得额3倍以下的罚款，但最高不超过3万元，没有非法所得的，处以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七）不按规定悬挂营业执照的，予以警告，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以2000元以下的罚款。  　　（八）抽逃、转移资金，隐匿财产逃避债务的，责令补足抽逃、转移的资金，追回隐匿的财产，没收非法所得，处以非法所得额3倍以下的罚款，但最高不超过3万元，没有非法所得的，处以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营业执照。  　　（九）不按规定申请办理注销登记的，责令限期办理注销登记。拒不办理的，处以3000元以下的罚款，吊销营业执照，并可追究企业主管部门的责任。  　　（十）拒绝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过程中弄虚作假的，除责令其接受监督检查和提供真实情况外，予以警告，处以1万元以下的罚款。  　　登记主管机关对有上述违法行为的企业作出处罚决定后，企业逾期不提出申诉又不缴纳罚没款的，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六十四条**　对提供虚假文件、证件的单位和个人，除责令其赔偿因出具虚假文件、证件给他人造成的损失外，处以1万元以下的罚款。  **第六十五条**　登记主管机关在查处企业违法活动时，对构成犯罪的有关人员，交由司法机关处理。  **第六十六条**　登记主管机关对工作人员不按规定程序办理登记、监督管理和严重失职的，根据情节轻重给予相应的行政处分，对构成犯罪的人员，交由司法机关处理。  **第六十七条**　企业根据《条例》第三十二条规定向上一级登记主管机关申请复议的，上一级登记主管机关应当在规定的期限内作出维持、撤销或者纠正的复议决定，并通知申请复议的企业。  **第十一章 附 则**  **第六十八条**　根据《条例》第三十六条规定应当申请筹建登记的企业，按照国务院有关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专项规定办理筹建登记。  **第六十九条**　港、澳、台企业，华侨、港、澳、台同胞投资举办的合资经营企业、合作经营企业、独资经营企业，参照本细则对外商投资企业的有关规定执行。  **第七十条**　对在中国境内从事经营活动的外国（地区）企业的登记管理，按专项规定执行。  **第七十一条**　本细则自公布之日起施行。 |